



삼일회계법인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May 15, 2025



Table of contents

01	Tax News	03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재산세 분리과세 신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세청,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실적 발표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07
상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 5. 7.)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2025. 4. 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88호, 2025. 4. 30.)		
03	최신 예규·판례	09
기계장치 수입승인 전에 지출한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시기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 보유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타이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01

Tax News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편안은 5월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주요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업은 업종별 상위 1% 기업 매출, 소기업은 업종별 상위 30% 기업 매출을 현행 매출상한 기준과 비교하여 이보다 낮은 경우만 조정 여부 검토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기준 상한이 업종별 상위 1%(소기업 30%) 기업 매출보다 큰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출입률 추이 변화 분석을 통해 실질 성장 없는 단순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을 출입할 가능성 검토 			
업종별 매출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타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상향 여부 검토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물가상승률·매출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매출 기준 조정 제도 일관성·적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매출구간 신설·변경 최소화 			
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합리적 조정				
중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현행 (5개 구간)	개편 (7개 구간)	현행 (5개 구간)	개편 (9개 구간)	
-	1,800억 원 이하(신설)	-	140억 원 이하(신설)	
1,500억원 이하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200억 원 이하(신설)		100억 원 이하(신설)	
1,000억원 이하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800억원 이하	800억 원 이하	60억 원 이하(신설)	60억 원 이하(신설)	
600억원 이하	6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0억 원 이하	40억 원 이하(신설)	40억 원 이하(신설)	
		3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신설)	
		10억 원 이하	-	

중기업 범위 상향 업종: 44개 중 16개 (단위: 억 원)

표준산업분류	중기업 범위기준 조정 업종	현행	개편안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1,500	1,800
C28	전기장비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	1,20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C33	그 밖의 제품 제조업		
H	운수 및 창고업	800	1,000
J	정보통신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600	800

소기업 범위 상향업종: 43개 중 12개 (단위: 억 원)

표준산업분류	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업종	현행	개편안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	140
C24	1차 금속 제조업		
H	운수 및 창고업	80	100
K	금융 및 보험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6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30	40
L	부동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P	교육 서비스업	10	1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재산세 분리과세 신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개정안 §102 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5년간(2025~2029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율의 단일세율(0.2%) 적용 및 종부세 비과세로 인해 세부담 완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결과 반영 5년간 분리과세 후 일몰 도래시 지원효과 분석 후 연장 여부 결정 <p>*해남·영암 기업도시와 태안 기업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 ②)</p>
재산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개정안 §108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명확화
2025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개정안 §109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위해 2025년의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3~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원 이하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 <p>※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p>

국세청,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실적 발표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꼬마빌딩 총 896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5.5조 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7조 원)으로 과세하였으며, 올해부터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시행함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꼬마빌딩과 주택 총 75건에 대해 감정평가하여 신고액(2,847억 원) 대비 87.8% 증가한 가액(5,347억 원)으로 과세하였으며,

또한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하여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이 2024년(48.6%) 대비 약 1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2025년 1분기 부동산 종류별 감정평가 실적 (단위: 건 수, 억 원, %)

종 류	건 수	신고액 (①)	감정액 (②)	증가율*
꼬마빌딩	41	1,861억	3,339억	79.4%
주택	34	986억	2,008억	103.7%
합계	75	2,847억	5,347억	87.8%

*증가율 = (② 감정액 - ① 신고액) ÷ ① 신고액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상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 5. 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추가하고,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로 정하고,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 말일 또는 권리 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 등 보유·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여 지역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른 연결 법인의 결손금을 이전 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 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2025. 4. 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연금 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 및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200억 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 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88호, 2025. 4. 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03

최신 예규·판례

기계장치 수입승인 전에

지출한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008,
2025. 1. 31.)

쟁점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24 ①), 이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란 투자 개시시기(조특령 §21 ⑫ · §23 ⑭)부터 투자한 시설을 목적사업을 위해 실제 사용한 투자 완료일(조특통 24-0-2)까지의 과세연도를 말하는 바,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수입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지출한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시기가 계약금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4년)인지 아니면 수입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5년)인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수입승인 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금 지출시점(2024년)이 아닌 수입승인일이 속한 과세연도(2025년)를 공제시기로 보아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개시시기 규정에서는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자산은 최초 주문서 발송일(조특령 §23 ⑭ 1호),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 하는 자산은 계약금 지급일(조특령 §23 ⑭ 2호)을 각각 투자 개시시기로 하되, 발주 또는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수입승인이 필요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수입승인일(조특령 §23 ⑭ 3호)을 투자 개시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조특령 §21 ⑫ · §23 ⑭), 수입승인을 얻기 전에 계약금을 지출한 과세연도는 투자 개시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과세연도이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언에 기초한 해석으로 판단됨

시사점

따라서, 내국법인이 수입승인이 필요한 사업용 자산을 수입하면서 수입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세연도에 지출한 계약금 등의 투자금액의 공제시기를 검토하는 경우, 단지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등을 지출한 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조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입승인이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시기 검토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쟁점사항

기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 보유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 3. 10.)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조특법 §30의 6)과 기업상속공제 규정(상증법 §18의 2)에서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령 §27의 6 ⑩ 및 상증령 §15 ⑤ 2호 마목, 이하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은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법인 고유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 4. 16, 서면법규-842, 2014. 8. 11. 외), 이번 유권해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함으로써,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였던 기존 유권해석의 입장을 변경하였음(2025. 4. 18, 국세청 세법해석 정비)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은 영업활동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도입된 기업상속공제 등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인지 여부는 쟁점규정의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심판원 결정례 등을 존중하여 수용한 회신으로 판단되므로(대법2018두39713, 2018. 7. 13, 조심2018서4162, 2020. 6. 19, 감심2019-270, 2020. 3. 9. 외), 법인이 사업의 다각화나 해외진출 등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물적분할 등을 통해 신설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또는 기업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타이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4446,
2025. 3. 31.)

쟁점사항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일부 제한된 업종(부가법 §19)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부가법 §39 ① 5호 및 부가법 §78 · §19, 이하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한 운행 용도로만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일지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비록 질의한 사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타이어 테스트라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질의한 사업자의 업종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자동차 구입에 따라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해석으로 판단됨

시사점

쟁점규정에서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는 사업자 명의의 자동차가 개인적 소비에 쓰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영업용’이 아니라 ‘업무용’이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는 조세정책상의 이유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용인할 경우, 과세관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업무용’ 내지 ‘사적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고려한 것이므로(현재 2014현바467, 2015. 12. 23. 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 2017. 6. 14.),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구입·임차한 승용차(부가가치세과-1277, 2010. 9. 29),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자가 테스트·시승회 등을 목적으로 임차한 자동차(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2020. 1. 31.)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위해 전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를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 한 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 재 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 태 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조 영 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 민 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ption](#).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